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2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확대함(안 별표 4).

-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안 별표 4 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4 제4호머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10. 28.~11. 17.)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사무명란 제2호다목, 마목부터 자목까지, 거목, 너목, 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사. 공공청사(동주민센터,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에 한함)
-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별표 4 사무명란 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 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사무명	관계법령	사무명	관계법령
<p>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 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p> <p>차. ~ 하. (생략)</p> <p>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p> <p>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p> <p>더. (생략)</p> <p>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p> <p>3. (생략) ○ (생략)</p>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다만, 특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 ~ 러. (생략)</p> <p><신설></p> <p>4의2. ~ 14. (생략) ○ (생략)</p>	<p>○ (생략)</p> <p>○ 법 제30조 제5항 단서</p> <p>영 제25조 제4항</p> <p>조례 제18조</p>	<p>자. -----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p> <p>-----</p> <p>-----</p> <p>-----</p> <p>차. ~ 하. (현행과 같음)</p> <p>거. -----</p> <p>----- 제외함</p> <p>너. -----</p> <p>5천제곱미터 미만 -----</p> <p>더. (현행과 같음)</p> <p>러. 시장(市場)(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p> <p>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p> <p>4. ----- ○ -----</p> <p>-----</p> <p>-----</p> <p>-----</p> <p>-----</p> <p>-----</p> <p>가. ~ 러. (현행과 같음)</p> <p>며.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 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p> <p>4의2. ~ 1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p> <p>-----</p> <p>-----</p> <p>-----</p> <p>-----</p> <p>-----</p> <p>○ (현행과 같음)</p> <p>○ -----</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위임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정훈(02-2133-845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시 시설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4] 제2호사목, 제4호머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의 근린공공시설로 규정한 사항으로 '우체분국'으로 정정 필요 - 제2호 각 목에서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제4호머목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근린공공시설 용어로 정정 (우체국→우체분국) - 제2호 각 목에서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제4호머목에도 적용되도록 명시